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7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일

발 의 자 : 전 은 혜 의 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여 “재계약”과 “재위탁” 용어를 구분 사용하여 개념상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이용료 면제 대상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관련 조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개정함(안 제16조, 제31조)
- 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보육제 서비스”로 용어를 개정함(안 제27조제1항, 안 제30조제1호)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1/2 감액을 완전 면제로 전환하고, 그 면제 대상을 신설 또는 확대함(안 제34조제3항)
- 라. 평가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 실시하도록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위탁기간”을 “재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일시보육 서비스”, “서울”을 “시간제보육 서비스”,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한다.

제31조 중 “재위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이용료 및 감면)”을 “(이용료 및 면제)”로 하고,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보건복지부지침 장애아 보육료 대상자(만 0세~만 5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6.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별표 중 비고란의 “-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됨.”을 “-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됨.(단, 평가제 프로그램 및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실시)” 로 한다.

별표 밑에 “※ 이용료 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1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위탁받는 기관 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탁기관은 기존 위탁계약 만료 시 재계약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한다.

② 제34조제3항의 이용료 면제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 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1회에 한하여 재위탁</u> 할 수 있다.</p> <p>② <u>재위탁기간</u> 만료 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u>신규위탁운영체</u> 신청자와 같이 공개 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u>일시보육 서비스</u>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u>서울</u> 광진구 육아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해 운영하여야 한다.</p> <p>제30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일시보육 서비스</u>의 제공 1의2. ~ 10. (생략)</p> <p>제3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재위탁</u>할 수 있다.</p> <p>제34조(이용료 및 감면) ①,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4.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p>	<p>제16조(위탁기간) 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p> <p>② <u>재계약기간</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설치 및 운영) ①..... <u>시간제보육 서비스</u>.....<u>서울특별시</u>.....</p> <p>제30조(기능) 1. <u>시간제보육 서비스</u> 1의2. ~ 10. (현행과 같음)</p> <p>제31조(위탁기간)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p> <p>제34조(이용료 및 면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게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보건복지부지침 장애아 보육료 대상자(만 0세~만 5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6.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 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p>

